협 약 서

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는 지역 내 연인간 폭력(데이트 폭력) 근절을 목적으로 상호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연인간 폭력(데이트 폭력) 근절 및 예방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, 제 2의 범죄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다.

제 2조(업무협약 주요내용)

1.연인간 폭력(데이트 폭력) 상습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사 및 연계 활동을 통해 제 2의 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대응

2. 연인간 폭력 예방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력

3. 사회적으로 폭력 없는 건전 사회 문화 조성에 상호 기여

제 3조(업무협약 세부내용)

1. 대상자의 정신건강선별검사지 제공

2. 대상자 정신건강선별검사 후 분석 결과 제공

3. 검사대상자 사후 연계를 위한 협조

4. 인격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협력

제 4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업무협약이 지속되어야 할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서로 조율하도록 한다.

우리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서를 작성·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3월 31일

성동구청장

정 원 오

성동경찰서장

이 동 환

협 약 서

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은 지역 내 연인간 폭력(데이트 폭력) 근절을 목적으로 상호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연인간 폭력(데이트 폭력) 근절 및 예방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, 제 2의 범죄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다.

제 2조(업무협약 주요내용)

1.연인간 폭력(데이트 폭력) 상습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사 및 연계 활동을 통해 제 2의 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대응

2. 연인간 폭력 예방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력

3. 사회적으로 폭력 없는 건전 사회 문화 조성에 상호 기여

제 3조(업무협약 세부내용)

1. 대상자의 정신건강선별검사지 제공

2. 대상자 정신건강선별검사 후 분석 결과 제공

3. 검사대상자 사후 연계를 위한 협조

4. 인격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협력

제 4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업무협약이 지속되어야 할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서로 조율하도록 한다.

우리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서를 작성·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3월 31일

성동경찰서장

이 동 환

성동구청장

정 원 오